

진료 협약서

김해시 복지재단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큰치과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는
치과협력병원 및 진료결연 협약서를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강관리
및 환자 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교류 및 제휴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
발전과 함께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2조 (업무협력 범위)

본 협약의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양 기관들은 대상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양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
상호 교류 및 이용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② 양 기관은 필요시 시설이용에 적극 노력한다.
 - “을”은 “갑” 및 가족이 병원을 이용 시 특혜(비보험 치료비20%감면)를 적용한다.(특혜의 내용은 별지로 첨부함)
 - 특혜(비보험 치료비20%감면)대상은 “갑”의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으로 한다.
 - 진료접수 시 “갑”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접수 시 해당자격이 확인되어야 한다.

제 3 조 (협조사항)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협약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.

- ① “갑”의 진료 시 “을”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- ②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보완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상호 협약하여 조정한다.
- ③ 서로 협력하여 많은 “갑” 및 “갑”의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.

환자를 향한 큰 마음 眞心[진심] 진료로 결과에 만족을 드리겠습니다.

제 4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

- ① 본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, 그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-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 5 조 (협약의 해제)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 중 일방은 언제든지 상대방과 협약 후에 본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단, 해지 의사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 6 조 (부칙)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업날인 한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 년 // 월 8 일

“갑” 김해시 복지재단

“을” 큰치과

이사장: 허상 곤 (인)

원장: 백철우



환자를 향한 큰 마음 眞心[진심] 진료로 결과에 만족을 드리겠습니다.